

11. 建築物臺帳의 記載 및 管理等에 關한 規則

建設部令 제507호 1992. 6. 1

제 1조 (목 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 및 기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영 제25조 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 3조 (건축물대장의 종류등)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 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및 양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의 번호·작성일자 및 작성사유
2. 건축물의 소재·지번·명칭 및 번호(명칭 및 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권의 취득일자 및 그 지분(소유자가 2인

-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자(사용검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일자) 및 그 번호
 5.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 지구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구역
 6. 건축물의 연면적 · 층수 · 구조 및 용도
 7.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
 8.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 층수 · 구조 및 용도
 9. 건축허가일자 및 건축허가번호
 10. 건축물의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및 감리자의 성명 · 주소
 11. 건축물의 건축면적 ·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면적
 12. 건축물의 주요설비 및 부설주차장 현황
 13.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자 및 변동사유
 14. 건축물의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및 부설주차장의 도면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하 “건축물현황도면”이라 한다)
 - ②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표제부에는 건축물의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을 표시하는 용지에는 전유 부분의 번호와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축물의 번호
 3. 제1항 각호의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표시하는 용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 5 조 (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외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및 건축물현황도면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대조 · 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현황도면은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거나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면

2. 구분소유 건축물별 전유부분 및 공유 부분의 층수·면적 및 용도와 부속건축물의 층수·면적·용도 및 구조등을 기재한 서류

3.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⑤ 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면 및 건축의 신고등을 한 서류(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시장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 (건축물대장의 정정) ① 시장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조 (건축물대장의 말소등) ①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멸실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장의 확인서
2.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서(철거 또는 멸실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축물대장은 이를 폐쇄한다. 이 경우 폐쇄한 건축물대장은 폐쇄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외에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중 건축물 현황도면의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건축물 현황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본의 발급 : 500원
 2. 초본의 발급 : 400원
 3. 열 람 : 200원
 4. 건축물현황도면의 발급 : 600원(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12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등) ① 건설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건축물대장의 권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기존건축물의 공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 3 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① 시장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건축물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기존건축물공부는 이기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1993년 3월 31일까지 관할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별·용도별·규모별로 건축물대장 이기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의 이기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제2항의 이기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우선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이 규칙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

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같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건축법이 개정(1991. 5. 31. 법률 제4,381호)되어 각 건축물별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작성절차와 그 유지·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등의 공부를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이용상태의 확인등 건축에 관한 각종 기초자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제3조제1항).
- 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에 속하는 건축물의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하되, 집합건축물대장은 표 제부와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함(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 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검사신청시 건축물현황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첨부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건축물 현황도면을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제5조).
- 라. 건축물의 구분소유가 필요한 경우 당해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제6조).
- 마.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수수료를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의 발급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현황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그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제10조 및 제11조).
-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년이내에 기존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을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고쳐 만들도록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건축물대장 이기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부칙 제3조).